

#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75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6월 17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6년 5월 26일 김형재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국제문화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(의안번호 제3681호)과 같은 날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」(의안번호 제3690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

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지난 4월 공포된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두 개 조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할 수 있음.

- 다만,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국가·타 지자체·민간과의 협력 강화, 조직위원회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함(안 제3조).
- 다.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타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함(안 제4조).
- 라. 행사장 및 기반시설 제공, 도시경관 조성, 시설 신축 및 개보수, 안전·의료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시민 참여 고취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활동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.

##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국내에서 서울특별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고,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(이하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가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국제문화행사의 지원)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·

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연장,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
2. 교통·통신·전력·용수·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·정비 및 관계기관 협조 지원
3.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
4.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·보수
5. 치안·소방·재난안전·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
6.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
제6조(민간 참여 활성화)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위임사무의 처리)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